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고, 주민등록번호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다함께돌봄사업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위탁 근거 마련(안 제56조 제7항 제6호)

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57조 제1항 제10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업무
지원

제57조제1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의2를 제12호의2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1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~ ⑥ (생 략)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6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</u>
제5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등록번호등”이라 한다)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</u>

<u>10.</u> ~ <u>16.</u> (생략)	<u>깨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무</u>
② ~ ④ (생략)	<u>11.</u> ~ <u>17.</u> (현행 제10호부터 제 16호까지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61